지게차가 넘어뜨린 구조물 사이에 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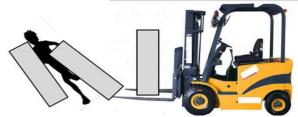
재 해 개 요

'15. 12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철구조물 제작 사업장에서 세워놓은 새들(압력용기 받침대) 사이에서 피재자가 사상 작업 도중 동료작업자가 지게차로 다른 새들을 건드려 새들이 넘어지며 새들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기인물(지게차), 가해물(새들)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 사고현장에는 사상작업을 위해 새들을 약 1m 간격으로 3개를 세워놓았으며, 피재자는 첫째 새들과 둘째 새들 사이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하던 도중
 - 동료작업자가 지게차로 새들을 들기 위해 포크를 상승하던 중 포크 끝부분이 둘째 새들을 건드려 재해자쪽으로 넘어지면서 피재자가 끼임

※기인물(지게차)

- 적재능력 : 2,980kg, - 디젤(53PS), - 포크길이 : 1,050mm

※가해물(새들): 약 3톤(길이 3.300mm × 폭 480mm × 높이980~1.500mm)

- 해당 지게차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운전하여야 하나 무자격자가 운전함
- 지게차의 포크는 제작당시보다 1,200mm 긴 2,250mm로 개조하여 사용함

재해발생 원인

- 중량물인 새들을 세워놓고 근로자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사상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옆에 있던 새들을 운반하는 도중 잘못 건드려 새들이 넘어짐
- 지게차를 사용하여 새들을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해당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운전 하여야 하나 무자격자가 운전함
- 제조 당시보다 포크 길이를 길게 임의로 개조하여 사용함

동종재해 예방대책

-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운반중인 화물에 접촉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해야 함
-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운전해야 함
- 지게차는 안전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제조한 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포크길이)을 준수해야 함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 ①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